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Contents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

●	I. 가이드라인 개요	5
●	II.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9
●	III. 「복제·전송의 중단」 가이드라인	10
	1. (권리자)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10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의 중단 처리	15
	3. (복제·전송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17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등	19
●	[붙임] 관련서식	20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20
	2. 위임장 서식(예)	21
	3-1.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복제·전송자)	22
	3-2.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권리주장자)	23
	4.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24
	5.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	25
●	[열린상담실 운영안내]	26

I. 가이드라인 개요

-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 중단)와 동법 시행령 제40조(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처리 절차 및 제반사항 등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되, 세부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또는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에서 복제·전송 중단 가이드라인과 예시 파일(PDF)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제4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I. 가이드라인 개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사실과 권리 등을 소명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등을 안내함
 -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요청서 작성법과 권리소명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한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 또한, 원활한 복제·전송 중단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여 합법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함

방향

- 권리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대상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필요서류와 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처리 및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소개하고자 함

근거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복제·전송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해당 조치를 취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전송 등에 관한 책임을 면제함
 - 저작권법은 2003년, 제11차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복제·전송)을 알고 즉시 이를 방지·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 저작권자(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절차를 수행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제 [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법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콘텐츠 유통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권리주장자(저작권자 등)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복제·전송 중단 요청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 중단)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

정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상(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자를 총칭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30호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복제·전송자** : 온라인상에 저작물 등을 게시하거나 그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재생,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22호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10호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¹⁾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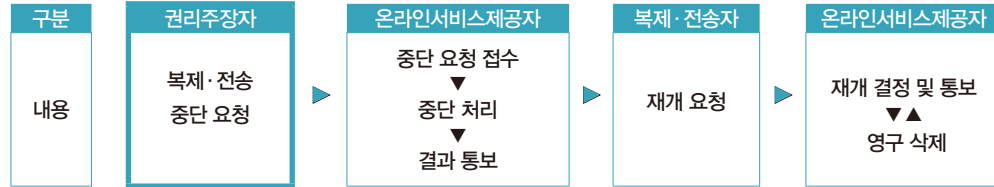
1)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II. 「복제·전송의 중단」절차

구분	대상	내용	저작권법
복제·전송 중단 요청	권리 주장자	① 중단 요청(온라인 및 서류접수) - 중단 요청서, 신분증사본, 권리소명 자료 등 * 대리인일 경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권리주장자 정보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 - 중단요청 저작물 정보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URL) 등 ③ 권리소명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예) 저작자 성명이 표시된 어문저작물 표지, 방송정보(작가, 제작자 등)가 표시된 화면 이미지 등 ※ 제출 서류의 미비, 저작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청한 권리주장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제103조 제1항, 제6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13조
복제·전송 중단 처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① 중단 처리 : 중단요구를 받은 즉시 복제·전송 중단 처리 ② 결과 통보 : 중단시kin 날부터 3일 이내 - 대상 :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 - 방법 :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첨부 ※ 수행인의 지정 및 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공지)하여야 함(수령인의 성명, 연락처 등)	제103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시행규칙) 제14조
복제·전송 재개 요청	복제·전송자	① 재개 요청 : 복제·전송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개 요청서, 신분증사본, 권리소명 자료 등 ②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재개요청자 정보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 - 재개요청 저작물 정보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URL) 등 ③ 권리소명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 저작자와 체결한 복제·전송 허락 계약서 사본 등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15조
복제·전송 재개 처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① 재개 결정 :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재개 예정일 :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14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날 ② 결과 통보 : 권리주장자 대상 재개 결정 통보 *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재개요청서 첨부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6조
영구 삭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재개 미접수 혹은 재개 부적합 결정 등의 경우 게시물 영구 삭제 →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간 합의 혹은 관련기간 및 소송 등에 의한 해결	-

Ⅲ. 「복제·전송의 중단」가이드라인

1.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음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방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운영 사이트별 고객센터 내 저작권보호센터(혹은 침해신고 센터) 등의 기능을 두어 중단 요청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 혹은 서면 접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음

-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휴대폰 및 아이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복제·전송 중단 요청 페이지 내에서 게시물 정보(게시물명, 위치URL 등) 기입→신분증 사본, 저작권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파일 형식으로 첨부→요청 등록

※ 본인 인증 후 단순 신고 접수 혹은 서류 접수와 동일하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예시 파일 : 보호원 및 저작권OK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류 접수) 사이트 내 온라인 접수 기능이 없거나, 권리주장자가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안내된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는 방법

※ 국내 웹하드(PC, 모바일 등) 사이트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서류로 접수받고 있음

· **필요서류** : 개인/법인, 본인/대리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며, 제출 서류 미비, 타인에 의한 요청일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구분	개인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등)
공통 (본인, 대리인)	①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저작권 증빙서류 ④ 진술서	①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저작권 증빙서류 ⑤ 진술서
대리인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 날인)	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작성 방법[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1. 8.>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앞쪽)

①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②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저작물	저작물 명 (제호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 (URL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③ 대리인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

⑥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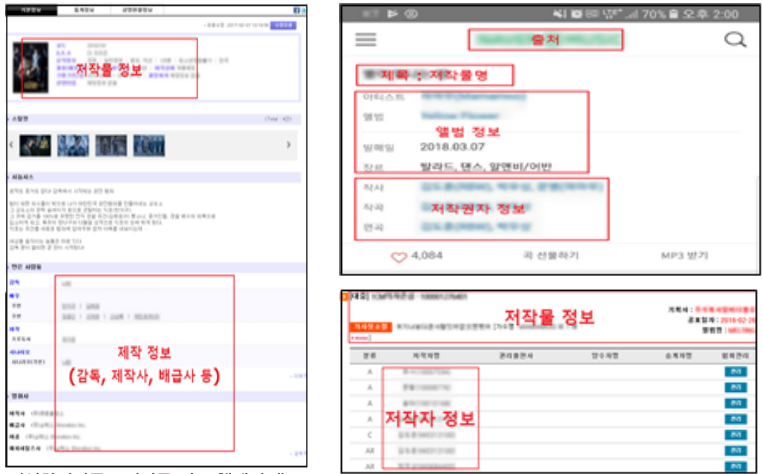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관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____년 ____월 ____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일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내용
①	- 중단 요청자(권리주장자) 정보 기입 : 성명, 연락처 등 ※ 본인 확인(신분증 사본 등) 및 저작권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함
②	- 중단 요청저작물 정보 기입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정보(URL 및 고유번호 등) ※ URL의 경우 사이트 대표 주소가 아닌 해당 게시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세 URL을 기입해야 함 (잘못된 예) http://www.abc.com/123456789 혹은 ABC 사이트 내 영화(최신개봉)123456789 등 (잘못된 예) ABC 사이트의 대표주소인 http://www.abc.com 으로는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음
③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권리주장자 외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함
④	- 신청날짜와 신청인의 성명 기입 후 서명(또는 도장 날인)
⑤	- 요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명을 기입함 (예시) ABC 사이트 요청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BC 귀하"로 기입

○ 복제·전송 중단 요청 첨부서류

- 저작권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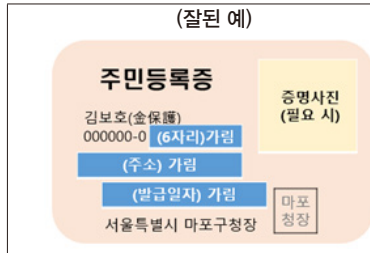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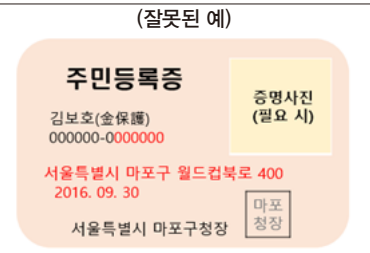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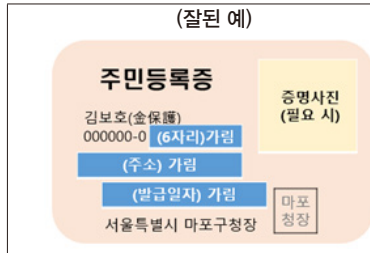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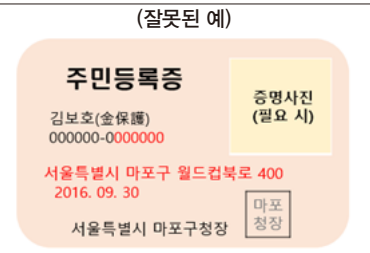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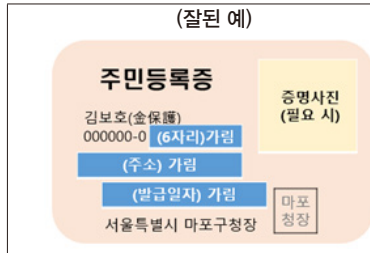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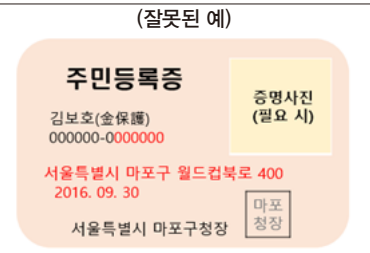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가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예시) 저작물명, 공표일, 저작자 등이 표시된 화면 캡처 이미지 혹은 표지 등
	 <p>〈저작권 등록증〉 〈어문저작물(표지 등) : 저작자 및 저작물 정보〉</p>
⑥	 <p>〈영화저작물 : 저작물 정보 웹페이지〉 〈음악저작물 : 신작관리단체 등록 저작물 정보〉</p>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①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요청자(본인/대리인) 확인 자료

구분	내용				
	<p>[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중 택일하여 사본 제출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증, 여권 중 택일하여 사본 제출 - (사업자 또는 법인 등) 요청자 개인 신분증 외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함 ※ OSP별 개인정보의 요구 수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함 (예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제외 정보 가림처리 요청 사이트에 가림미처리시 서류 제출 시 점수가 불가함 				
⑥	<table border="1"> <tr> <th>(잘된 예)</th> <th>(잘못된 예)</th> </tr> <tr> <td>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1 (6자리)가림 (주소) 가림 (발급일자) 가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td> <td>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00 2016. 0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td> </tr> </table>	(잘된 예)	(잘못된 예)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1 (6자리)가림 (주소) 가림 (발급일자) 가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00 2016. 0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잘된 예)	(잘못된 예)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1 (6자리)가림 (주소) 가림 (발급일자) 가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p>주민등록증 김보호(金保護)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00 2016. 0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p>[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권리 위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인(요청자)의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신분증 종류 상동 ※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함 - 본인(요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 OSP별로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요청자(위임인) 및 대리인 정보, 위임내용 및 기간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함, [붙임2] 위임장 서식(예) 참고 ※ 위임장이 없는 타인의 신청일 경우, 요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진술서, ※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권리주장자에게 있음

2. 복제·전송의 중단 처리

구분	내용
⑥	<p>- 저작권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당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처벌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p> <p>※ 단, 저작권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요청자가 배상해야 하며 ·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요청자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p>예시) 온라인 접속 사이트의 서약 및 동의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서약 및 동의</p> <p>저작권법 제103조10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또한 권리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 고의로 복제, 전송을 요구하여 본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 요청자 (본인/대리인) _____ 서명/인</p> </div> <div style="width: 45%;"> <p>서약 및 동의</p> <p>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이유 및 침해된 권리의 내용, 소량을 500자 이내로 기재해 주십시오.</p> <p>권리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 없이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경우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p> <p>본 상기 요청인(대리인)은 본 게시중단 요청의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모두 허위거나 이의를 확인하여 위와 같이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p> </div> </div>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단서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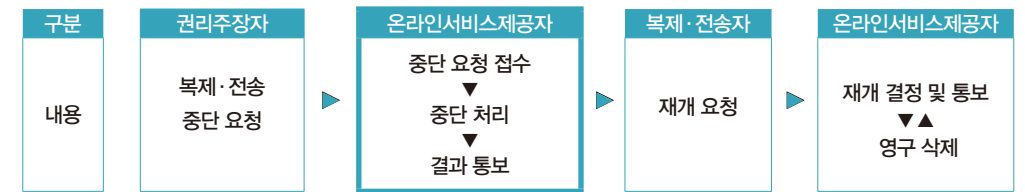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거 :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본인 혹은 대리인)가 본인의 신분과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고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복제·전송 중단 처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규정 절차, 서식에 따라 중단 요청이 접수된 게시물 of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해야 함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 (복제·전송 중단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 중단 처리 결과를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 기간 :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3일 이내
- 방법 : 통보서(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첨부)
 - ※ 통보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복제·전송자), 제42호(권리주장자), [붙임3] 참고
- 대상 :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 내용 : 복제·전송 중단 결과, 복제·전송 재개 요청 안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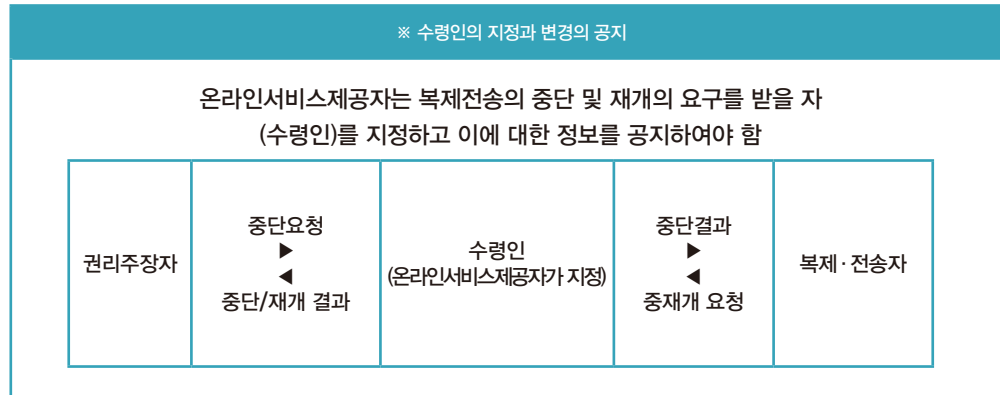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복제·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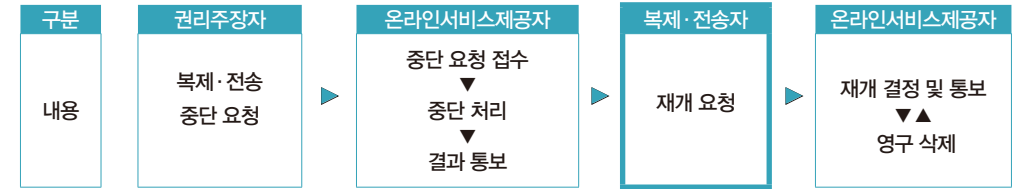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 중단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의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중단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기간 :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본인 확인, 권리소명 자료 등 첨부)
 - ※ 요청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붙임4] 참고
- 권리소명 자료 : 저작권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중단 요청과 동일) 혹은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허락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 요청자(본인/대리인) 확인 자료 : 중단 요청 시와 동일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진술서 ※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복제·전송자에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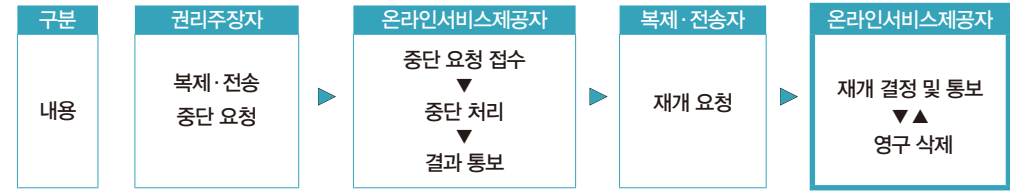
* 근거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②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등



- (재개 결정 및 통보) 복제전송자로부터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일 이내 재개 여부 결정→(재개 결정 시)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함
 - 기간 :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방법 : 통보서(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첨부)
 - ※ 통보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붙임5] 참고
 - 대상 : 권리주장자(재개 결정 시)
 - 내용 : 복제·전송의 재개와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통보 등
 - ※ 재개 예정일은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함[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 근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게시물 삭제) 복제·전송의 중단 이후 재개의 요청이 없거나 재개의 요청이 부적합할 경우 등 해당 게시물 영구 삭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지, 통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
 - 이후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간 합의 혹은 관련기간 및 소송 등에 의한 해결이 있을 수 있음

IV. 관련 서식[붙임]

[붙임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1. 8.>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앞쪽)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저작물	저작물 명 (제호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 (URL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 리 인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p>「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p>				
첨부서류	<p>1.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____년 ____월 ____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붙임2] 위임장 서식(예)

위 임 장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input type="checkbox"/> 게시중단(임시조치/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재게시(이의신청/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음원/동영상 저작권 보호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사이트명 내 저작권침해신고에 관한 모든 업무)			
위임기간	20 ____년 ____월 ____일 ~ 20 ____년 ____월 ____일 (최대 1년)			
대리인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p><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p> <p>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신고] 위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수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단체신고] 개인신고 시 수집항목 + 단체명, 단체주소, 대표자명, 단체 등록증 사본</p> <p>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 및 단체 식별,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p> <p>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즉시 파기,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은 본인 식별이 처리 완료된 후 즉시 파기합니다.</p> <p>그 외의 신고서와 신고 내용은 관계법령 및 민·형사상 소송 대응을 위해 보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p> <p>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실 경우 동意的에 O를 표시해 주세요) 위임인 동의 : 동意的(), 동意的하지 않음() 수임인 동의 : 동意的(), 동意的하지 않음()</p> <p>본인(위임인)은 사이트명의 게시물 차단을 위해 필요한 권리침해신고 업무를 위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기간 중 수임인이 요청한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위임인)이 지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위 임 인(성명 또는 업체/단체명) (서명 또는 인 / 단체 직인 날인) 수신 : 사이트명 귀하</p>				

[붙임4]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p>■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11. 8.></p> <p style="text-align: center;">복제·전송 재개 요청서</p> <p style="text-align: right;">(앞쪽)</p>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명(상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	저작물 명(제호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URL 등)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일시		
대리인	성명(상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p>「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p>			
첨부서류	<p>1.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다.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라. 저작물등의 저작권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p> <p>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p>4.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p>		
210mm×297mm[백상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붙임5]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

<p>■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앞쪽)</p> <p style="text-align: center;">복제·전송 재개 통보서</p>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명 (상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 (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재개 예정일				
<p>「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셨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오에 따라 복제·전송이 재개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권리주장자 ○○○○○ 귀하</p> <p>※ 첨부서류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p> <p>※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p> <p>① 성명(상호명) : ② 전화 번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④ 주 소 :</p>				
210mm×297mm(일반용지60g/m ² (재활용품))				

[열린상담실 이용안내]

☞ 복제·전송 중단을 포함하여 그 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작권 공정 사용·침해 예방을 위한

열린 상담실

한국저작권보호원

○ 이용안내 ○

- 전 화 : 1588-0190
(교육, 법률상담 및 기타 안내 : "0"번 선택)
- 대 면 :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열린상담실
- 온라인 :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내
저작권 보호상담 메뉴

※ 전화 및 대면 상담 이용시간은 근무일 기준 09시~18시이며, 대면 상담의 경우, 더욱 편리한 상담 이용과 필요 시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위하여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소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연락처	TEL. 1588-0190 / FAX. 02-3153-2709
자가용	<p>가양대교 경유 가양대교를 건너시고 국방대학입구사거리에서 상암고등학교를 지나 LG Telecom 건물 좌회전 하신 후 KGIT건물과 디지털매직스페이스 건물 사이 서울산업진흥원 건물</p> <p>강북/성산대교방향 성산대교를 건너 평화의 공원을 지나 DMC홍보관에서 좌회전 한 후 KGIT건물에서 우회전 하신 후 KGIT건물과 디지털매직스페이스 건물 사이 서울산업진흥원 건물</p>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구)수색역(6호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구)수색역 하차 2번 출구에서 버스이용 7730/7711버스 환승 후 누리꿈스퀘어 정류장 (3정거장)에서 하차 KGIT건물을 끼고 돌아 디지털매직스페이스 건물 사이 서울산업진흥원 건물
버 스	누리꿈스퀘어 정류장 하차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3번 출구로 나와 중앙교에서171, 7711버스를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2호선 홍대입구역2번 출구로 나와 7016버스를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또는 7711버스를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9/10층
T. 1588-0190 F. 02-3153-2709 H. www.kcopa.or.kr